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9-10호

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년 3월 29일

옥 천 군 수 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누수 감면율 확대와 과태료 처분을 완화하는 규정 신설.

○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적용단계를 하향 적용하고, 감면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여, 요금 현실부과,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, 부담없는 공교육의 학사일정을 추진하는데 혜택을 주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○ 수도요금 감면율 확대(안 제36조제2항)

가. 기존 : 정상 사용 달 3개월 평균량의 50% 감면, 감면신청 120일 이내

나. 변경 : 정상 사용 달 3개월 평균량 부과, 감면신청 기한 없음

○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추가(안 제36조제5항)

가. 기존 : 초·중·고, 요금 3단계 적용

나. 변경 : 초·중·고, 유치원, 요금 2단계 적용

○ 과태료 처분 완화(안 제42조 단서 신설)

가.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처분 면제 또는 경감

4. 의견제출

○ 「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4월 17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상하수도사업소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기일 : 2019년 4월 17일까지

○ 제출방법 : 서면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전화번호, 의견 등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

○ 제출기관 : 옥천군수(참조 : 상하수도사업소장)

- 주 소 : 옥천군 옥천읍 동부 15,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 (우29040)
- 전 화 : (043)730-4835
- F A X : (043)731-7453

5. 붙임

○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조례 제 호

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수는 사용자의 책임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, 지하 등 누수 발견이 곤란한 곳에 누수된 경우에는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부과한다. 다만,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에 한정한다.

⑤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은 별표1의 사용구분 2단계까지만 적용한다. 단, 학교, 유치원의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.

제42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요금 등의 감면) ①(생략)	제36조(요금 등의 감면) ①(현행과 같음)
②군수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하여 옥내 누수가 되어 누수지점이 벽체속관 노후나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로서 수도사용자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옥내 누수복구를 완료하고 상수도 누수요금적용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감면 신청을 한 경우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금액의 50%를 감면한다. 다만,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으로 한정한다.	②군수는 사용자의 책임없이 수도 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,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 누수된 경우에는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부과한다. 다만,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에 한정한다.
③~④(생략)	③~④(현행과 같음)
⑤군수는 「초・중등교육법」의 규정에 따른 초・중・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에	⑤「초・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・중・고등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은 별표1의 사용구분 2단계까지만 적용한다.

한하여 사용구분 단계를 3단계까지만 적용한다.	단, 학교, 유치원의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.
⑥~⑦ (생략) 제42조(과태료 등)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서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처한다. <단서 신설>	⑥~⑦(현행과 같음) 제42조(과태료 등)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서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처한다. 다만,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례명 :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